

제429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2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3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4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4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4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5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5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5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5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5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5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2)
 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5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

상정된 안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 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 5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5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5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5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5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5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5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5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5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5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5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5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5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5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5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5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5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5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5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5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5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5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5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5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6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6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6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6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6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6
3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6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6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6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6
4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6
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6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6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6
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6
4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6
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6
4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6
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6
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6
5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6
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6
52. 국유재산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6
5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6
5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6
5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6
5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6
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6
5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6

(09시30분 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3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4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4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4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5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5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5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5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5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5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2)
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5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09시31분)

○**소위원장 정태호**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권입니다.

3권의 212페이지 박정 의원안을 논의하다가 지난 회의가 중단이 됐는데요. 212페이지 보시면, 박정 의원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계획의 조정, 예산배정의 유보 및 배정 예산의 집행유보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과거 23년, 24년 세수결손 시 지방교부세를 일정 부분 불용하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오는 개정안인데요. 그런데 배부해 드린 별지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박정 의원안하고 수정의견 별지가 있습니다. 박정 의원안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배정유보나 예산의 집행유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수정의견을 수석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해 봤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배정유보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참조해서 기재부가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서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중앙정부 일방적인 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지방재정 운용하는 데 약간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포인트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해 연도의 정산에서 배제한다 그래서 꼭 지방에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3개년에 나눠서 이걸 정산 할 수 있는데 2개년으로 몰아서 정산하면 오히려 지방재정 운용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시·도지사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절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차관님, 사실은 의견 청취라는 게 구조가 되게 일방적인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니네 의견만 제출해라’ 이런 식의 구조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 구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아니지만 일종의 회의는 해야 된다,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저는 더 적정하고.

이를테면 세입구조가 국세에 연동돼서 교부세·교부금이 결정이 되는데 이 세입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예측의 실패 그리고 어떻게 보면 23년, 24년은 예측이 뻔히 오는데도 기재부가 계속 잣단 말이지요. 저희들이 세입경정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세입추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무수히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계속 고(go)를 진행했어요. 결국에는 세수추계를 재추계를 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되게 폭력적이었어요. ‘니네는 알아서 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카톡으로 메

시지 보내고. 그것도 의견 청취지요, ‘니네는 의견 있으면 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지요. 이 의견 청취라는 구조가 되게 또 다른 폭력적인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시·도지사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의 구조는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견 들어야 된다 이거는 의견만 들으면 되지요. 그런데 회의 구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이요.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자면 기재부가 예산집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도지사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시·도지사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서 협의권을 시·도지사협의체에 주는 게 어떤가, 물론 협의를 완강하게 거부해 버리면 기재부로서는 좀 난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합의하여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협의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만들어 놓은 수정의견하고 협의 그다음에 합의 단계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박수영 위원 합의까지 이르지 않으면 협의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회법이나 다른 법률에 비춰 볼 때 협의라는 부분은 합의가 안 돼도, 협의 단계에서 협의만 하더라도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법적인 의무,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만든 수정의견하고 협의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협의는 통상적으로 공문이나 공식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가지고, 보통 공문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협의로 보고요. 그다음에 의견 들어야 된다는 것은 공문이나 공신력 있는 그런 정도보다는 좀 낮은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박수영 위원 정부 측에서 답변이 좀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협의로 했잖아요. 그럼 협의하는 경우에 기재부는 어떤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까?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이런 조항이 현행에는 지금 없는 조항인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항으로서도 저희는 충분히 협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이렇게 협의라는 문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일정 비율 이내에서’ 이 표현이 있어요. 일정 비율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세수결손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흡수할 수 있는데요. 첫해에 흡수하는 부분이 만약에 5%면 5% 이내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세수결손이 10% 나서 10% 정도 전체적으로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첫해에는 5% 이내에서 불용하는 것으로 협의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한 10% 정도 감액이 돼야 되는데 그걸 3개년도에 나눠서 감액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첫해에는 이게 5%든 아니면 3%든 나눠서 첫해에 안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일정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제시를 한 거고 적정비율에 대한 검토는 지금 돼 있는 단계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오케이.

지금 이 협의라는 문구는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용 과정에서 운용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협의라는 단어는 지극히 형식상의 표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각자의 논리와 현실, 이유 등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협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을 일부는 양보를 하고 상대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된다면 이미 됐을 거예요, 의견을 듣는다는 표현을 하든 협의라는 표현을 하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다, 그래서 내가 적정 비율이라는 것도 거기서 한 포인트를 찾아보고서 물어본 건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적정 비율, 적정 기준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찾아가서 연구를 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차라리 의무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비율이나 적정성 이걸 잘 검토를 해 보시면 거기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적정 비율이 이상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적정 비율이 얼마인지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에서 너무 다를 수 있어서 이게 5%, 10% 이렇게 경제·재정 여건하고 상관없이 특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지난하고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한말씀……

○소위원장 정태호 예.

○박대출 위원 거기에 저희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지요. 그걸 보다 시스템화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안하고 기재부가 예산 당국으로서의 권한만 틀어쥐고 그냥 자의로 또는 임의로 해 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자의적이다, 임의적이다라는 그런 포인트라기보다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해 연도에 얼마만큼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것 자

체로써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그해의 자체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 이 두 가지 항목 말고 얼마만큼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연 불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지 지금까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는 아닙니다.

○박대출 위원 자꾸 설전이 되는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협의해야 한다’까지는 합의가 돼 있지요. 그렇지요?

○김영환 위원 기재부 오케이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협의해야 한다. 그러면 간사끼리 그리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 이상을 놓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이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 2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재부 의견은 수시배정 등의 사유를 국회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에 집행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검토의견은 수시배정 등의 사유는 사전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율성 제약보다는 수시배정 등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제공의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수시배정 등을 하는 경우 자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용 내역 등의 국회 제출과 같이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기 소위 자료 222페이지에 있는 기재부 의견은 ‘국회 제출 의무화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재부 의견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의견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데 대해서 국민이 내신 세금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예산 과정의 본질을 감안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국회사무처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분기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시배정하고 배정을 유보하고 집행을 보류하는 이런 절차가 지난 23년, 24년도를 보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한 의도적 불용, 의도적

인 배정유보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개정안을 내긴 했는데 제 개정안 중에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을 기한으로 하여야 한다’ 이 2개 조문은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자체 없이 소관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아까 분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저번에 추경 관련해서 감액 추경 관련한 사안들을 추경의 요건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가지고도 상당히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23, 24년에 아주 특수한 경우였잖아요. 근래 10년 내에 제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증액된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으로 3개월 전 수시배정해야 된다, 배정해야 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세입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배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는데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규정을 해 주면? 저는 그래서 그 시기에도 사실은 세입경정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맞았는데 세입경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 정리한 것 아닙니까?

저는 현실에 맞는 대안과 입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3년, 2024년의 경우에 예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너무 큰 폭의 세입의 누락이. 저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물론 보전할 수 있지만 그걸 전제로 하게 하면 너무 전체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 측과 간사님들이 조금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래서 추경의 요건에 있어서도 감액 추경에 대한 문제들도 얘기했던 바가 그런 거지요. 그런 것 하나 다 넣어 버리면 아주 특수한 예를 일반화시키면서 하면 또 그것이 하나의 정쟁의 요소로 다시 소환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진성준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김영환 위원님이나 김영진 위원님께서 다음번 논의 의제를 먼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얘기가 복잡해져 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정부가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거나 또는 변경할 때에 자체 없이 제출하자라고 하는 거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니 이 문제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확정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 내용이 그다음에 있으니까 그걸 또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그 조항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다음 의제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분기별로 사유를 제출하는 것은 배정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보류하는 경우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거니까 그 사유 제출에 대해서는 사실 222페이지에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정부도 수용하고……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제가 정리를 할게요.

분기별로 사유를 제출하는 거는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 우리 토론의 2번인데 3개월 전까지……

○진성준 위원 1번이지요, 1번, 토론의 1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1번만 말씀드렸고 2번은 제가 다시 설명을……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 2번 설명하지 않았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요, 1번만 설명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내가 2번 설명하라고 그랬었는데……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1번은 정리하고 2번 설명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자, 그것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제 2번 설명하겠습니다.

227페이지, 2번입니다.

개정안은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에도 불구하고 회계 종료 3개월 전까지는 모든 확정예산을 배정하고 집행보류를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하단부입니다.

수시배정 등은 예산의 집행 가능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제 요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사전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지정요건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외 없이 예산을 배정하거나 집행보류를 해제할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확정예산을 배정하고 집행보류를 해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회계 종료 3개월 전 모든 집행보류 예산의 일률적인 해제보다는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 의결로 집행보류 해제 등을 요구할 경우 기재부장관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하고 방금 앞에서 논의하는 사안을 토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는 행정부의 집행 효율성, 이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직전에 논의했던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예산배정을 변경하거나 예산집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유를 제출하는 게 저희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수시배정을 하거나 예산배정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집행을 보류하

는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런 사유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다든가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부의 집행 효율성 측면과 그리고 또 집행 현장의 세세한 사정에 충돌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반영하지 않으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사실은 기재부의 자율성, 그러니까 예산 심의·확정되고 기재부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부여해야 되냐 사실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비춰 봤을 때 저희들은 세수 평크를 매우기 위한 과정이, 이 불용조치들이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을 보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의도적이라고 저희는 좀 읽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조치한 것들이 6조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발생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거냐, 세수 평크를 어떻게 매운 거냐, 그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냥 지정요건을 해석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면 그냥 불용처리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 과정의 투명성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기재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정도 합의 수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나 혹은 예결위 의결로 집행보류 해제 등을 요구할 때 이런 거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심의·확정이 이미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왜 이거를 보류조치하고 유보조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임위나 예결위 의결로써 이것을 기재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좀 따라 주는 이런 과정은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데 애시당초 이 논의의 출발은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해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감액되어야 할지방교부금, 교부세를 3년에 걸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그냥 다 조정해 버려 가지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시·도지사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논의해 보자라고 하고 넘어가셨는데 저는 그 협의의 문제가 정리되면 구태여 종료 전에 국회의 요구로 집행을 배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바로 조정해 버리지 아니하고 3개년도에 걸쳐서 세수결손 부분을 정리하자고 하면 지방재정의 부담도 그만큼 덜어지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비율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예산배정이나 집행계획 등을 발생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1항은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 조항은 조금 유보해서 이후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다시 검토한다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서 시·도지사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하는 정도는 반드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이요.

○박대출 위원 지금 기재부 의견을 보면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부의

예결위의 의결이라든지 국회의 간섭, 관여, 개입 필요 없이 기재부가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요? 손대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의견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26페이지에 보시면 2항 그리고 7항, 8항, 9항이 지금 신설되는 조항인데요, 저희는 2항하고 9항 그리고 특히 9항하고 관련해서는 ‘지체 없이’ 돼 있는데 이거를 ‘분기별’로 해서 2항하고 9항은 신규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7항하고 8항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행정부의 집행 효율성 두 개의 균형 차원에서 봤을 때 7항하고 8항은 굳이 반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박대출 위원** 내용이 다른 건데. 이건 지금 집행보류고 보류를 해제하는 것 지금 논의하는 거잖아요, 김영환 의원님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박대출 위원** 다른 건데…… 다르지, 같은 게 아니지요. 돈 푸는 거랑 돈 뚫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같아. 저는 장치를 조금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참고로 228페이지에 보시면 수시배정하고 배정유보·집행보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배정의 경우에 법 제·개정이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그다음에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수시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집행지침에 있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 보시면 그것에 따라서 24년도 수시배정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에 수시배정이 95개 사업에 대해서 수시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수시배정 요건이 다 해소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기재부하고 소관 부처나 아니면 소관 사업시행자 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인해서 하반기나 3/4분기 이후에 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나 소관 부처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기재부는 아직 수시배정 요건에 해소를 못 했다고 볼 수 있고 국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또 수시배정 요건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용이나 이월이 안 되게 해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두 번째 개정안이 나왔다는 걸 생각하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협의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서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는 없나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방교부세, 교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하고 별도로 모든 현안 사업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협의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국회 예산심의하고 확정된 예산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집행의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배정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을 보류하는 조치들이

기재부는 또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요건들에 해당이 됐을 때 지출이 불가능하거나 협의가 덜 되거나 계획이 덜 되거나 또 다른 매칭 예산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런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이쪽에서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85번같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행안부 3000 억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정부 사이드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의결해서.

그리고 이 내용들 한번 검토가 필요한데 최종적으로 불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국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심의·확정하고 예산 통과시켰는데 행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배정유보·집행보류 8항을 보십시오. ‘기타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심의·확정된 예산안과 나중에 행정부가 집행하는 부분에 괴리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잘 조정해 주신 것 같은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기재부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을 보류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절충 과정이 필요해서 저는 사실 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 의견이라 함은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의 의결로 집행보류 해제 등을 요구할 경우’ 이거지요?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저는 차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의 의결로 해제 요구할 경우 기재부장관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집행 효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이 먼저 들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김영환 위원님, 평소에 제가 늘 의견 존중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 받아들이는 편인데, 229페이지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수시배정 사업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수시배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배정률은 그렇게 우려스러울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95% 또 99% 이런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까?

또 배정을 유보한 경우를 보면 배정유보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0개 부처의 35개 세부사업이었습니다만 대상액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해요. 또 2023년도에는 90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억 7000만 원. 그렇습니까?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배정유보 되는 것이. 그다음에 집행보류 사업은 그거보다 조금 크긴 합니마는 배정률을 보면 역시나 87.7%, 95.2%.

그래서 이렇게까지 국회가 정부의 집행에 대해서 요구하고 통제할 필요까지가 있는가. 오히려 그간에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의 불용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더 논의하면서 이런 수시배정이나 예산 배정유보가 훨씬 심각해지면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견이 있으니까……

박대출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요.

○박대출 위원 그냥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성격이 좀 달라.

○박대출 위원 물론 다르지요. 다르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차이가 있나요? 9항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 또는 보류 해제하는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다 묶어 버리면 어때요?

○김영환 위원 그건 받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보류 해제까지.

○진성준 위원 그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박대출 위원 해제, 지금 이것은 해제 얘기잖아요. 3개월 전에 확정하고…… 두 가지 문제잖아.

○진성준 위원 아니, 보류를 해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할게요.

○박대출 위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절충안을 내 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어차피 지금 정부하고도 입장이 다르고 또 위원님들 간에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부칙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31페이지입니다.

최기상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예산은 독립기관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 내용을 그대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독립기관 예산의 수시배정을 금지하며, 예산배정계획 조정·배정유보·집행보류 시 사전에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독립기관 예산의 임의적 조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공고히 하고 독립기관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고, 현재 독립기관의 장이 기재부장관의 예산배정계획 조정 및 수시배정·배정유보·집행보류 등에 대하여 견제 할 수단이 전무하고 독립기관의 예산 규모가 전체 충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 등에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독립기관의 예산배정요구서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보다는 기재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예산보고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확정하고 관련되는 사

항 그리고 집행의 효율성하고 관련되는 사항, 2개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고요. 국무회의에서 독립기관의 장들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독립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이 사안은 예산편성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집행의 효율성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효율성하고 관련된 내용은 독립기관도 다른 여타의 행정기관과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저희 입장은 신중 검토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요.

의견이 없으세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국고금 관리법입니다.

2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아까 취지랑 비슷한 취지입니다. 지출의 조정이나 제한 등을 통하여 국회·대법원·현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재정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출 원칙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개정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독립기관의 재정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준 독립기관 예산의 총지출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해서 재정독립성 훼손 방지를 위한 지출 원칙을 명시하더라도 국고금 수급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직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기관의 예산편성하고 관련된 의견과 자율성은 현재도 충분하게 존중되고 있고요. 집행 과정에서는 독립기관의 경우에도 여타 행정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같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앞에 다 논의했던 사안이라서 또 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 다음이요.

○ 김영환 위원 드릴 말씀은 많은데……

○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으로 갑시다. 갈 길이 맙니다.

○ 김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43페이지 3번의 경우도 독립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국가재정법의 취지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 소위원장 정태호 예, 이것도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자료 4권입니다.

4권에 있어서 처음에 담배사업법 부분은 간사 간에 합의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별지 보고자료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보고자료입니다.

첫 번째 담배 정의 확대 관련 논의 사항하고 그 뒤에 목적 규정 개정 등 기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담배 정의 확대 관련 논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배 정의 대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협의,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포함시키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니코틴이 담배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와 동일하게 제조업 허가,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개별소비세 부과 등의 규제를 받게 되어 청소년 등의 용이한 접근성을 차단하는 궁정적인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포함될 경우 니코틴 껌 등이 담배 정의에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담배 정의 명확화 측면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외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밑의 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다음으로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를 위한 부칙입니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담배 정의가 확대될 경우 이미 영업 중인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하여 당장 폐업의 우려가 있어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 도입을 간사 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은 거리제한 유예에 동의하고 다만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가 기존 퀄런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감안할 때 2년의 거리제한 규제 유예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한 유예기간 동안 합성니코틴 점포가 제조업 허가 기준 미달이라든가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로 수익성 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의 업종전환이 필요한 경우 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대의견(안)은 보시면 정부는 담배 정의 확대로 인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업종전환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과세 일부 감면을 위한 부대의견입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재부 의견은 한시적 감면에 대해서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은 제세부담금 부과에 따른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생계에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감면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고 보았고, 다만 조세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부대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담배 정의 확대로 인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 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몰수 대상 확대는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담배 또는 원료의 몰수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서 몰수 대상에 니코틴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사니코틴에 대한 규제 방안입니다.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의 제조·유통·판매 확산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의 수입·제조·유통·판매가 위해성 검증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검증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과 니코틴 원액을 혼합하여 액상 전자담배 제조가 가능하고 화학물질관리법상 농도 1% 이상의 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는 점을 고려하여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니코틴 확산에 따른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서 인체 흡인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국회사무처에서 죽 발표해 주신 보고자료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이요.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제가 오늘 발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 좋은데 2페이지에 보면 지정소매인 거리제한을 2년간 유예하자라고 하는 데 합의가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그러면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도 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 점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월련형 담배, 옛날 담배 같은 것 이런 것도 팔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니냐, 그건 금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

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법안 정리나 부대의견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 부분은 검토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웰련을 판매할 경우에는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는 합성니코틴이나 무니코틴 제품을 팔아 왔기 때문에 웰련형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의견에서도 그 부분은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되 다만 기존 웰련을 못 팔게 함으로써 수익성 악화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전환이나 필요한 경우에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으로 그 대책을 좀 마련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합성니코틴 가게에서는 기존 담배 못 판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지침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법률로 정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부칙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부칙으로 정리하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진성준 위원 부칙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10페이지의 부칙에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오케이.

○박대출 위원 그럼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지요, 중요한 사항인데.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은요, 질문?

○진성준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거리제한 2년 유예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매인 지정을 그동안 거리제한 요건을 못 맞추면 점포가 폐쇄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이 맞춰진 데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건을 못 맞추면 폐쇄되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2년 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한 거리 안에 있으면 2년 후에는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세 임대차계약이 보통 2년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이미 맺은 사람들은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거고 2년 후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니까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지금 전자담배 무인판매기들 있잖아요. 곳곳에 보면 거리에도 있고 또 PC방이나 이런 데도 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그런 건 이제 못 들어오게 되나요, 2년 뒤에 거리제한 요건을 받으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무인판매기는 기존에 보이는 PC방이나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부근에서는 합성니코틴이 담배 정의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박대출 위원 기존 담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 담배도 무인판매기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것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 박대출 위원 그것도 거리제한 대상이 지금도……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지금 돼 있는 건 법이 시행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 박대출 위원 아니요, 현행. 현행 무인 담배 판매기.
- 김영환 위원 연초 말씀하신……
- 박대출 위원 말고 일반 무인판매기…… 담배 판매기 없나?
- 김영환 위원 그것은 거리제한이 다 있겠지요.
- 진성준 위원 그것 없어졌어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무인판매기는 있는데요.
- 박대출 위원 있잖아.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외로 성인들만……
- 박대출 위원 아니요. 지금 현행 담배 무인판매기가 거리제한의 대상이 된 상태로 하는 거예요?
- 진성준 위원 (담뱃갑을 들어 보이며)
이것 자동판매기는 없어졌어요. 한때 시행하다가 없어졌어.
- 박대출 위원 아, 없어졌어요?
- 진성준 위원 예, 제가 담배 피우니까 알잖아.
- 박대출 위원 무인판매기에서 본 기억만 나 가지고……
- 진성준 위원 옛날에 있었어요.
- 소위원장 정태호 아, 월련형 무인판매기는 없어요?
- 진성준 위원 없어. 담배 좀 피우고 살아.
- 소위원장 정태호 얻어 피우기만 해 가지고……
(웃음소리)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즉각적인 과세가 필요하지만 한시적 감면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장 감면하면 어느 정도 감면을 예상하는 거예요, 차관님?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전에 저희가 기재부 의견을 받았을 때는 50% 이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별 법에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 얼마나 감면할지에 대해서는 개별 법에 의해서……
-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은 물어본 거예요.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환경에너지세제과장입니다.
기재부는 50% 정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원일치로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 준 이 내용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준 위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 소위원장 정태호 예.

○**진성준 위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기간 5년 아닙니까? 5+5 해서 10년이잖아요. 그런데 2년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년 유예한다 돼 있고요. 2년 동안에 5년은 있지만 전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방안을, 대책을 강구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서 ‘보통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대출 위원** 잠깐만 부대 하나, 지금 말 나왔으니까……

그런 걸 조금 정부가 법안보다는 방침이든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5년 지나거나 1~2년 된, 아예 5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계약기간 완료되는 건 상관없는데 2년·3년, 3년·4년 이렇게 애매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업체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을 차별화하거나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걸 정부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기간이 2년 이내에 있는 쪽은 혜택을 받는데……

○**박대출 위원** 2년에 문 닫고 나면 갈 데도 없고 계약기간은 만료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업종전환도 여의치 않고 아주 애매할 수가 있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기간이 3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진성준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사안이 심각한 논의로 되어 왔기 때문에 무작정 계약기간을 다 보장해 준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박대출 위원**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 결론 내린 것처럼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준 이 내용대로 일단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참고 자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참고 자료가 아니라 여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타 사항은 유통질서 확립 등 목적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동법은 담배의 판매, 담배판매업의 등록, 소매인의 지정, 담배의 판매가격 등의 규정을 통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동 목적 추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담배소매인 우선지

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시행규칙에 두고 있으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에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명의 대여를 통한 담배 판매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적용례를 통해 이 법 시행 이후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규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일이나 담배 정의 확대 및 몰수 규정에 관한 적용례, 타 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일부 규정 삭제입니다.

기재부 의견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적용례랑 다른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합성니코틴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과 집행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의 시행 방안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밑의 대안과 같이 적용례와 타 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국회사무처에서 보고해 준 유통질서 확립의 목적 규정 추가,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신설,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근거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이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2년의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시행일이 6개월이니까 사실상은 오늘부터 치면 2년 6개월의 혜택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차규근 위원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1년 6개월로 돼 있네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요. 1년 6개월입니다.

○박수영 위원 1년 6개월로 줄여 놨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지금부터 6개월 시행 후에 하고 6개월 시행이 되면 이제 1년 6개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이 들어가는 거니까……

○박대출 위원 지금부터 2년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그러니까 공포 후부터……

○박수영 위원 그렇게나 돼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 박수영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 차규근 위원** 10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네요, 10페이지 부칙 정리해 둔 것 보면.
- 박수영 위원** 10페이지? 아직 안 넘어갔네.
-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은 너무 좀 빡빡하게 가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것까지 있나.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공포 후 시행 기간이 6개월이고 그다음에 1년 6개월을 더 준 거니까 공포 후로부터 2년을 부칙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 진성준 위원** 부칙 4조 2항·3항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4항까지?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 박대출 위원** 이런 것은 유예는 2년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하지. 시행 후에 시행을 2년 하는 거지 공포하고 그걸 6개월까지 계산해 가지고 유예라는 표현을 쓰면 그것은 너무 야박한 것 같은데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공포 후 기준이고요. 시행 기준으로 하시면 부칙을 고치셔야 됩니다.
- 박수영 위원** 처음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하고 2년을 추진했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주택하고는 달리 상가는 5년이 맞다면 이걸 굳이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5년이면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6개월이 되면 조금 여유는 주는 이런 형국이 되고. 아이들 건강 생각하면 빨리해야 되지만 사업자들도 고려 안 해 줄 수는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5년은 틀림없이 맞습니까, 상가는?
- 김영진 위원** 상가 임대차는 5년이에요.
- 박수영 위원** 일반 주택은 2년이고?
- 박대출 위원** 5년이고 10년, 20년.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 박수영 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한번……
- 진성준 위원** 법 시행 이후 2년으로 할까요?
- 박대출 위원** 2년이 좋을 것 같은데……
- 박수영 위원** 글쎄, 그 정도로 2년 해 주는 게……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시면 2년으로 고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시행 후 2년.
그러면 기타 사항도 다 법 시행 후 2년으로 정리해서 통과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 행정실장 정상훈** 박성훈 의원안 논의하신 다음에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출 위원** 박성훈 의원은 다른 것 지금 이의 없잖아?
- 김영진 위원** 이의 없어요.
- 박수영 위원** 아까 한 거 아니에요?
- 행정실장 정상훈**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또 있어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심사자료 4권입니다. 박성훈 의원안은 좀 다른 내용이 되어 가지고요, 5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인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 신설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담배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재부 의견은 담배 소매인 지정·관리 사무는 지자체 이상 사무이므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은 지자체에서 담배 소매인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교육의 통일성·일관성이 저해되고 지자체별 교육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은 담배의 판매와 유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국의 담배 소매인 규모가 약 12.6만 개소임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과 함께 교육 관련 관리·감독이 어려워 교육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기 담배 소매인에게 담배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새로이 의무화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이요.

정부는 반대네?

○**박수영 위원** 기재부가 지금 이런 것까지 교육할 만한 여유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담배사업법 관련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8항까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4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발주·계약에 잘못된 법령 해석 등의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수정·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행정 역량이 열악한 행정기관·공공기관이나 조달 관련 실무 경험이 부족한 조달 담당자의 경우 자체조달 발주·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공공조달의 안전성·신뢰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기재부 차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도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조달청장한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계 법령 등의 잘못된 해석 등으로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유념해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공지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정도는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요기관과 조달기관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한다면……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계약상의 문제가 중대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바로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열악하거나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없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거는 중소기업 업체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겁니다. 자체에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와서 계약을 하는데……

○박대출 위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계약을 하는데 거기 올려놓은 게……

○박대출 위원 잠깐만요.

계약에 잘못이 있음을 인지했을 때 수정·변경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을 취소하는데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은 이게 확정된 계약 측면이라기보다는 계약 입찰공고 이런 데 대해서 입찰공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 이전의 얘기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주로 집행……

○박대출 위원 순수하게 집행 이전의 얘기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진성준 위원 제가 이 법 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지난해……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있어야지, 집행 전이라는.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한정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군부대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

물 쓰레기 용역 조달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법상 면세사업이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자들은 면세 사업인 줄 알고 그렇게 입찰에 응했는데 나중에 부가세를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거거든.

그런데 조달청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군부대에다가 ‘야, 너희들 잘못됐어. 그거 면세 사업이 아니고 부가세 부과 사업이야’ 이렇게 수정해서 조달 공고를 내도록 요청했어야 되는데 조달청은 알았지만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 조달청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수정하자는 게 아니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하게끔 하자, 권고하자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달 공고상의 문제이지 그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 문제는 서로 따져서 업체가 부담을 하든 정부기관이 그 손해를, 피해를 보상하든 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사전에 조달 공고 과정에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런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말씀……

○**소위원장 정태호** 예, 말씀하세요.

○**박대출 위원** 지금 이 법안의 개정안 내용으로 보면 이게 계약 협의가, 논의가, 계약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지 계약이 완료된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진성준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계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성사됐다 그러면 이건 해당 안 되는 법안인가요?

○**진성준 위원** 그거랑 무관하다니까요.

개정안 한번 보십시오.

72페이지, 표의 오른쪽 개정안—이게 제가 낸 법안인데—4항이 그렇습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 또는 계약 사항에 관계 법령 등의 잘못된 해석 등으로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조달시스템에 올라온 입찰공고 또 입찰공고에 따른 계약 사항이 잘못됐을 때 수정을 요청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까지 강제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없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개정안의 내용대로 보면 사후가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명확지 않아요, 사후에 됐을 때는.

지금 이 시점이 뭐냐 하면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거든.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박수영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그게 73쪽의 조문자료 개정안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입찰공고가 잘못돼서 조달청이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미 체결돼서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이 되는 의미고요.

○**박대출 위원** 이건 완료까지도 전제가 된 조항인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계약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실 잘못된 사항을 조달청이 인지했다면 그 사항을 먼저 수요기관에 얘기해서 수요기관이 체결 중이더라도 더 늦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체결 중이더라도……

○**박대출 위원** 아니, 법안 문구를 보면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정안 문구를 보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진성준 위원** 위원님,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 체결에 대해서 조달청장의 통보로 무슨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계약되었으니까 그거는 니네들이 조치를 해라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손해와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달청장이……

○**박대출 위원** 지금 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개정안 조문자료 2조하고는 맞지 않아요.

○**진성준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조달청장에게……

○**박대출 위원** 이게 지금 2조를 보면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잘못이 있음을 알았으면……

○**박대출 위원** 경우에도라는 얘기는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면 이건 진행이 끝난 이후에도 적용된다는 걸 전제로 한 조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구는 그래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진성준 위원** 위원님, 제 말씀 조금만 귀를 열고 한번 들어 봐 주세요.

그 얘기는 계약이 진행 중이고 또는 계약이 완료됐어도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조달청장으로서는 그 계약이나 용역 공고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통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설명이……

○**소위원장 정태호** 춰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계약 진행……

○**박대출 위원** 사후는 아니라며. 아니라고 그래서……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계약 진행 중이거나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도 조달청장이 인지를 하면 해야 된다라는 취지고……

정부 입장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공고의 경우나 아니면 공고 단계를 지나서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이 끝난 사안의 경우에도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수정이나 변경 요청을 하는 게……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 해석은 그거라고요. 왜 아니라고 그래.

○**소위원장 정태호** 결론부터 얘기해요.

○**진성준 위원**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일단 정부 얘기 듣고.

그래서 찬성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하는데 입찰공고도 엉망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옛날에 새 만금 그때 보면 계약의 오류가 몇 가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로 지정이 된 계약들이 중앙정부가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이 나라장터에서 나라장터 시스템만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소위원장 정태호**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조항은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거고. 그런데 박대출 위원님은 뭘 걱정하시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업체들에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대책을 뭘……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성준 위원** 업체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요?

○**박대출 위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많이 있을 수 있지. 나라 믿고 계약을 했어, 계약이 이루어졌어, 책상 다리를 만들든 뭘 만들든 직원을 고용해서 만들었어, 그걸 팔아 야지 사 갈 사람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진성준 위원** 아니,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박대출 위원** 계약이 완료되면 집행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정부가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거나 임의적으로 계약 공고를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건 정부 책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정부 책임인데……

○**진성준 위원** 그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조달청장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 주니까. 그런데 그걸 업체가 피해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지요.

○**박대출 위원** 그렇지 않지요, 현실적으로는. 피해 구제책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진성준 의원님 발의하신 의도는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서 무슨 제품을 만들고 있다면 피해가 상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되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을 잘못했으니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찰공고와 계약 체결 과정에 있는 거라면 조달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체결이 돼 가지고 한참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잘못했다

고 그러면 그 기업체는 아래저래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배상을…… 배상에 대한 규정도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차관님이 조달청장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것 관련해서 이 부분 아까 설명에서 사전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박대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만일에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 법령의 잘못된 해석 등 잘못이 있다고 조달청이 인지를 했는데 조달청이 거기에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저는 필요하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든지 하게 되면 사실은 잘못된 공지를 한 그 수요기관과 해당되는 민간업체 사이에 개별적인 민사 분쟁으로 그냥 별도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지, 정부 조달기관이 이런 잘못을 인지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공지 사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달청의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달청은 조달청대로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잘못된 공지로 어떤 수요기관과 민간업체 사이에 계약이 체결돼서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거기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 있는, 귀책사유가 있는 그 수요기관과 민간업체 사이에 민사상 분쟁으로 별도의 프로세스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을 이 법에서까지 잘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수요기관과 민간업체 사이의 분쟁을 이 법으로 다루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 법은 이 법대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준 위원** 그 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사 분규를 다루는 조항이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민규 위원님 발언하시니까요.

○**박민규 위원** 차규근 위원 설명대로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 민간 계약을 보호할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개정안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제가 잠깐……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금 입법에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관계 법령 등의 잘못된 해석 등으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주를 의뢰한 해당 기관, 쉽게 말해서 정부의 책임이지요, 정부기관의 책임. 정부기관의 책임이 민간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냐? 업체는 이미 그걸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소송으로 따로 해결하고 정부는 여기에 그냥 오류를 잡는 그 과정만 하고 말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이거는 국가가 정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스템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진성준 위원** 왜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박대출 위원 취지는 법령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거는 충분히 알고 그거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되셨어요.

임기근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입찰공고 중이든 아니면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든 아니면 계약 체결이 끝난 사안이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되는 거는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박대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또 선의의 피해 아니면 어찌 보면 의도하지 않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것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인정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 체결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단 이 법안을 시행해 보고요 계약 체결이 끝난 것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따져 보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차관님이 늘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진행 중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계약이 완료돼서 이미 생산단계에 들어와 있으면 그 계약 민간업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하고 계약 체결해서 물건 만들었는데 한참 만들고 났더니 그거 잘못된 거라고 취소를 하면 이 업자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느냐? 뭐 보상 단계가 있겠지요. 그러다가 이 업체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뢰보호의 원칙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다는 거하고 이익이 상충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 보면 이게 고의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해석을 하다가 잘못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해 버린다고 하면 너무 과도한 행정작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차관님, 정부기관이 아니라 해당 업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해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저는 오히려 이 조항이 도입됨으로써 민간업체로 하여금 어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수요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지 않을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 수요기관과 민간업체 사이의 계약 자체가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어 가지고 그 자체로 이게 폐기되거나 취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조달청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정해’라는 근거가 있으면 민간업체가 해당 수요기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엄청난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진성준 위원 훨씬 유리하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제가 검토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조

달청이 잘못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통보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그 통보한 순간부터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책임이 있으면, 그 수요기관의 책임이 있으면 수요기관이 그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그렇게 조기 종결을 할 수 있는데 조달청이 인지한 경우에도 손을 놓고 있으면 점점점 그 누적 손해액이나 그런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달청이 위법인 상황을 발견하면 계약 체결이 됐더라도 그 시점에서 먼저 인지하게 하도록 해야지 수요기관이 그 상황에서 문제를 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이 계약이 진행 중인,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만 적용해 보자라는 중재안을 내신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성준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진행 중 그거는 저는 이의 없습니다. 정부의 잘못을民間에게 전가시키는 이건 잘못된 제도라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충분히 쟁점을 명확해졌고요. 중재안까지 나왔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갈게요.

○**진성준 위원** 왜 이걸 보류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태호** 합의가 안 되니까……

○**진성준 위원** 아니, 합의가 안 됐어도 이거 좀 따져 봅시다.

제가 아까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군부대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용역하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는 음식물 처리 사업이 부가세 면제사업이다라고 공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가세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가세 문제 때문에 그걸 빼고 입찰에 응한 업체가 나중에 부가세를 부과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잘못 공고한 군부대가 책임져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달청은 인지하고 있었대요. 어, 저거 군부대가 잘못 해석하고 있네? 그런데 조달청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사전에 그거 수정해라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간업체가 계약하고 나서 오히려 손해가 커진 거지요.

○**박대출 위원** 아니, 그거는 계약 논의 중에, 협상 중에 그거 알고 있었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건데 이 법안을 그렇게 체결 중인, 진행 중인 상황에 적용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우도 계약이 완료된 경우라니까요, 그 경우도.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례와 결국 이 조항을 통해서 그 업자한테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박대출 위원님은 그 최종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상 무효화 돼 가지고 업체에서는 물건을 이미 만들어 놔 가지고 납품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항이 그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업체가 정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단계까지 가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피해가 크지요.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쟁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관님은 일단은 시행 자체를 입찰 중인 단계까지만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고, 그렇게 입장이 너무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리려면 표결밖에 없어요.

○진성준 위원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쟁점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아니, 법을 만드는 주체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성준 위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국민은 다양한 국민이 있을 수 있지, 그게 어떻게……

○진성준 위원 아니, 자꾸 그냥 개인성만……

○박대출 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입법 갑질이 될 수 있다고요.

○진성준 위원 무슨 갑질이에요? 과도한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국민 생각 안 해서 이런 법안 낸다는 것입니까?

○박대출 위원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진성준 위원 입법 갑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박대출 위원 갑질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따져 보자는 거예요.

○박대출 위원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진성준 위원 아니, 지금 토론하는 과정 아닙니까?

○박대출 위원 목소리 낮추라고요.

○진성준 위원 목소리 높인 것은 박대출 위원이 먼저 그러신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진성준 의원님은 법을 발의하신 분인데 그걸 갑질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결례지요.

그리고 진성준 위원님, 목소리 낮추시고요.

○진성준 위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서 무슨 생산 같은 거 다 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갔어, 기업들 입장에서. 그런데……

○박대출 위원 아니, 법의 실익도 있을 수 있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그 법의 또 다른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남이 발언……

○박대출 위원 자꾸 본인 주장만 하니까 그렇지.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박대출 위원한테도 계속 발언권을 드리잖아요. 다른 분 얘기하실 때 말씀을 들으셔야지요.

○진성준 위원 그래서 기업이 그 잘못된 계약에 따른 투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 계약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지했다면 그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잘못된 계약으로 선투자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

에 대해서 무슨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만 자꾸 하시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기해서…… 계약이 이미 체결돼서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줘 보세요.

○**박대출 위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박대출 위원님 제가 충분히 발언권을 주는데 자꾸……

○**박대출 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하라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발언권을 요청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박수영 위원**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차관님, 이게 아무리 봐도 조달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공고 단계에서 발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고 단계에서 발견 안 했다가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체결 과정에서 발견한 것도 사실은 늦은 거예요,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런데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물건을 수주받아 가지고 만들고 있고 장비도 투자하고 했는데 중간에 가서 이거 잘못됐다고 통보한다는 거는 조달청이 게으른 거라. 사실은 공고 단계……

이게 전자입찰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 단계에 개입하는 건 저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 중인 것까지도 세모지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에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계약이 체결돼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서까지 ‘야, 그건 위반이야’ 이렇게 통보를 한다는 것은 이 법의 범위를 넘는 것 같아 이거지요. 그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지고 아까 차규근 위원님 말하신 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기업이 쉽게 변호사 사 가지고 소송하는 것 같습니까? 그 것도 다 비용이고 작은 업체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돼서 진행되는 것까지 막아버리면 성크 코스트(sunk cost)가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법이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보기에는 이 법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적용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우려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잘못된 입찰공고나 어떤 규정 또 이 법의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결론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잠깐 보류시켜 놨다가 제가……

○**진성준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성준 위원** 조문 자료 부칙에 제2조 후단에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거나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체결하여’라는 말을 빼면 됩니까?

○**박대출 위원** ‘경우에 적용한다’고 해야지요.

○**진성준 위원**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한다’. 아니, 왜냐하면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도 해당하는 것인니까. ‘체결하여’라는 말을 빼면 됩니까?

○**박대출 위원** ‘도’ 자가 빠지면 되는 것이지요.

○진성준 위원 아니, 그 '도'는 불가피하게 들어가야만 해요, 입찰공고 전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박대출 위원 아니야, 두 가지지. 공고 진행 중, 계약 진행 중.

○진성준 위원 그러든지요.

○박대출 위원 두 가지지. 계약 완료된 것은……

○진성준 위원 계약 완료된 것은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해서 2조를 수정하면 받아들이십니까?

○박대출 위원 그러면 저는 이의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태호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적용례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공고나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다라는 지금 개정안의 신법을 만들기 전에 생긴 계약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적용례기 때문에요. 만약에 계약 체결이 된 부분을 제외하려면 사실 본문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계약 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문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수정을 해 가지고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정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 의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체결된 경우에는 제외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짧게……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을 그만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진성준 위원 전자조달법이요? 그것은 아직 수정안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의결을 해?

○박대출 위원 그거는 그 뜻을 담는 거는 맡기면 되는 거지, 위원장한테.

○소위원장 정태호 그 취지를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나. 그래서 전체회의 전에 다 보여 드리고 동의를 얻고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 길이 맙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대사업과 관련된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최대 50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최대 50년까지 연장되어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이 증가하므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이 증가하면 이용자의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액을 인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대사업은 추진 시 별도의 경쟁입찰 등이 없이 주무관청의 승인만 필요한데 사용·수익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할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부대사업의 이익이 과소 산정되거나 실시협약에 적절히 산정 및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81페이지 오른쪽 상단입니다.

따라서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계약 개선 주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주기적으로 부대사업의 순이익 등을 재산정하여 실시협약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민간투자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기간을 민간투자 본사업에 맞춰서 저희는 규정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은 있고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조치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이요.

○박수영 위원 최대 50년이니까 그 안에서 행정부가 재량을 갖고 사업의 규모에 맞게 산정하면 될 것이고 우리 재정이 모자라니까 민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82페이지에 보시면 부대사업의 유형 중에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추가되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계약 당시에는 그 이익을 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리츠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10~20년 지나면 그 수익이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되게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저희가 말씀한 대로 50년을 한 번에 협약을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한 10년이나 5년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마다, 초과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그 수익에 대해서 협약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좀 보완하는 게 특혜 소지를 막는 수단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요?

○박대출 위원 법에 최대 5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년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요.

○박대출 위원 아무 상관 없어요. 행정부가 오케이 하는데 뭘……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두자라는 취지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 보면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이 경우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렇게 후단부를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게 어디 있어요? 책자에는 없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책자에는 없는데 안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저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부대 수익기간의 연장, 실시협약의 순이익이 증가할 경우에는 사용료 인하 등을 반영해서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저도 수석전문위원의 조항들을 좀 넣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를 상대로 이런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해당 시기에는 사실은 그 사업의 영역이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수익이 덜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시기가 가면서부터는 사실은 시장에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는 형태가 존재하고 발생하면서 저 사업이 공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부대조건에 넣어 주면 그런 우려들을 정부 베이스에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러면 1년마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뭐 10년 단위, 아니면 끊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저는 넣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민투가 맥커리 같은 데서 들어오는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을 우리가 보상해 주느냐? 그것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너 이익 많이 봤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민투사업 자체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가 민투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민투사업이라면 시작할 때 정부는 민투사업자든 수익이 얼마나 날 건가 예상하고 거기에서 합의를 하고 가야지, 중간에 손해는 안 갚아 주면서 이익이 났다고 더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민투에 도움이 됩니까? 나는 오히려 민투사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예상보다 수익이 적게 나는 경우에도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수익이든 손해가 나든 사실 둘 다 감안해서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면 그게 어떤 요건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문은 수익이

날 때만 뱉어 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다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희 지금 별지 자료 보내 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뭐냐면 거기에서 수익과 손해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대사업 시행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기간마다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을 재검토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익이든 손해든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포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과도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입니다.

민자사업이 지금 한 800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부대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게 6건에 불과합니다. 부대사업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특혜 소지를 말씀하시는게 일단 부대사업을 모두 턴하는 데도 6건밖에 안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본사업에 부대사업 기간을 매치시켜 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자사업 평균수익률이 BTL이 실제 3%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대사업의 조건에 원칙이 뭐가 있느냐면 사용되는 수익의 반 이상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인하를 하거나 재정의 총사업비를 감하거나 그런 장치가 대원칙이 있고요.

혹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잭팟이 터져 가지고 부대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면 저희가 민자사업기본계획하고 표준실시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실시협약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선언적으로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령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정책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질의응답의 과정이니까……

국장님, 그 부대사업 중에 6건이라고 했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김영진 위원 대표적인 부대사업의 예를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 민자사업에 태양광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접어넣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택지개발이나 역세권개발 이런 것들이 큰 사업들이거든요. 아마 말 그대로 어떤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역세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크기로 이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넣으면 한마디로 이거는 부대사업이잖아요. 민간투자 사업에 플러스알파로 돼서 그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대사업이잖아요. 본사업이 사실은 메인이고 이거는 본사업에 결부된 아주 작은 사업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민간투자 사업들의 진출입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 허들을 낮추거나 그런 조건이 돼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업하고 부대사업의 사업 구조를 매칭시켜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 여건이 바뀌면 재구조화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평가해서 재구조화를 하자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민자사업의 메커니즘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법안에다가 몇 년마다 리뷰를 해 주자고 하는 것들이, 그것은 정책적인 입법자의 재량일 수는 있지만 저희 실무 의견으로서는 일단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굳이 그런 것을 안 넣어도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김영진 위원** 재구조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뭐 된다고 그래요? 재구조화 돼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재구조화는 주무관청에 이번에 사업시행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재구조화를……

○**김영진 위원** 뭐가 돼요. 지금 GTX-B·C 안 되고 있잖아요. 재구조화 요청을 했는데, 총사업비 관련한,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그것은 재구조화 항목은 아니고요. 체결된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 요청이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재구조화를 한 예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많은 사업들,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재구조화해 가지고서……

○**김영진 위원** 얼마 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됐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는데 사용료, 통행료 자체를……

○**김영진 위원** 그것은 통행료 조정이고.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통행료 조정을 하려고 재구조화를……

○**김영진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저는 유연성을 둘게요, 한번 상의하는데…… 부대사업의 조건에 의해서 사업의 진출입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상황인데, 50년을 최대로 10년 정도의 과정에서 재평가를 통해서 한다라는 조항은 합리적인 사안인데 국장님은 법으로 두는 게 무겁다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들어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저는 그래도 법에서 입법자의 의지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사업에 맞춰서 다양하게 열어 주겠다는 것 자체가 선언적으로도 입법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봐요, 지금 기존의 17개 사업에 추가되는 사업 7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7개 사업에 특별하게 그런 정도의 유효성이 있어요? 보시기에 이 법 개정의 실효성이 있어요? 부대사업 유형에 추가 7개 하는 거 아니야, 기존 플러스 7개인데…… 사업의 내용이 그런 게 별로 아니에요.

○**박대출 위원** 역세권개발이나 태양광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고.

○**김영진 위원** 역세권?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박대출 위원** 동물장묘업……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금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투자 활성화잖아, 그렇지요? 민간투자 활성화되도록 가야 되는…… 저는 지금 수정안도 족쇄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부대사업이 6개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어쨌든 리스크와 수익은 비례를 해야 돼, 고리스크면 고수익이 되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특혜를 줘 버린다, 특혜로 인식해서 그것을 또 거두어들인다……

사실 또 수익의 절반은 환수하는 장치가 있잖아,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면 이것을 풀 때는 찔끔 푸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푸는 게 이 법 정신에도 맞고 개정안 정신에도 맞고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우리의 큰 경제운용 방향에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뒤의 수정안이 표현도 없이 그냥 바로 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면 만약에 이 조항들이 없이 그냥 가면 부대사업이 본사업에 벼금가거나 상당히 육박하는 부분으로 갈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추가된 부분들이 노인주거시설, 동물장묘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등 사실은 국가 공유지이거나 시유지·국유지나 여타 부분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지요? 사업의 내용 자체가. 그러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수익이 창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변해 나가는 건데, 사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일례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요새 노인병원을 짓는데 노인병원은 작게 짓고요 거기에 부대사업인 장례식장을 노인요양병원보다 더 크게 짓는 거지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훨씬 더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례로.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사업이 본사업보다 50%를 넘어가는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요, 공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투사업이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을 전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사업이 50%를 넘어가서 사업성이 좀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민투사업으로는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추진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박대출 위원 그런 게 규정이 있어요, 50%?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아니아니, 저희가 민투 수익률을 한정할 때 그렇게 해서 50%가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좀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아니,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김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박대출 위원 규정도 없이……

○김영진 위원 그것 임의조항이잖아요.

○박대출 위원 임의로 그냥?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예.

○김영진 위원 한 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되게 적극적인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는 특혜 시비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이라 그래야 되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정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받을 수는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는 있지요 민간투자사업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거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그러니까 답만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뭔가 사정변경이 생기면 주무관청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조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사업 자체를 불확실성에 빠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반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이 단서 조항 넣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보류할게요.

다음 넘어갑니다.

○김영진 위원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박수영 위원 아니아니, 전문위원이 낸 수정안 빼면 하겠다는 거지.

○박대출 위원 정부는 수정안을 반대하는 거지요? 지금 수정안 빼면 찬성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대출 위원 나는 정부랑 입장이 같아.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공모의 경우 협행법상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박스에 보시면 지금 30%로 제한돼 있는 자금 차입, 사채 발행 한도를 100%로 증가시키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차입·사채의 발행 한도 상향 시 신속한 자금 확보에 기여하여 운영상 유연성을 제공하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부동산펀드 등의 차입 한도와 비교했을 경우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향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차입 한도 상향 시 금리 상승기에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공격적인 투자로 투자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87페이지, 따라서 공모 인프라펀드의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한도 상향은 자금 차입을 통한 공모 인프라펀드의 활성화 측면과 차입 자금 증대 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공격적인 투자로 투자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는 등 일반 투자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금 차입 한도 상향에 있어서 현행 30%에서 개정안 100%의 대폭적인 상향 방안 이외에 단계적인 상향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는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30%에서 100% 안이 엄청나게 많이 증대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8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 이것은 200%까지 가능한데 지금 100%만 하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도 문제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후자로 해서 여기는 부동산펀드는 2배까지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도 2배까지 하는데 인프라펀드도 1배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박민규 위원님이요.

○박민규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업 구조로 봤을 때 인프라펀드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특성상 부동산을 2배로 한 이유와 유사하게 100%는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100%로 개정하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들이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통과합니다.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모 인프라펀드의 자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사회기반시설 외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모 인프라펀드의 투자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공모 인프라펀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다른 펀드의 자산운용 범위와 비교하여 투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산총액 10% 이내에서 SOC사업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단부에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일정한 제약조건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한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90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숫자를 뒤집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는 지금 사회기반시설 말고 0%, 하나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는 다른 사업의 50%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다른 사업의 40%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리츠, 다른 사업의 30%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0%를 10% 정도 하면서 이런저런 우려를 심각하게 표현하는 것은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한 10% 정도는 사회기반시설 말고 그 나머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똑같은 기준으로 총자산의 0%, 50%, 60%, 70%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앞엣것을 100%로 해 놓으니까 같은 기준으로 표가 작성이 안 돼서……

○김영환 위원 아니, 표 보면 그렇게 다르게도 읽혀요.

○박수영 위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박대출 위원 나는 못 읽었어. 설명 듣고 읽었어.

○박수영 위원 헷갈리는 위원님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없으면 통과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번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3페이지입니다.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입니다.

개정안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를 통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를 허용함으로써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배제함으로써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하지 않아 자산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펀드 내 회수된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리츠 회사도 지금 여기 국회사무처에서 명확하게 표시해 주신 것처럼 상장 리츠 20개 중 14개는 존속기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모 인프라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자본시장법에 따라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대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

드를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만 94페이지 중간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배제하기 위해서 개정안과 같이 민투법 44조에서 자본시장법 23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할 경우 또 41조 제3항에도 230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과 배치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걸로 하면 되겠네.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은 조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5번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설정·설립 이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사모 인프라펀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류 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사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통보 의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사모펀드의 경우 2015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설립규제가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되었으나 현행 민간투자법상 등록이 아닌 보고의 경우에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고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은 당연히 문제없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통과합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101페이지 부칙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저것부터 하면 어때요? 뒤의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이 좀 급한 게 있어서……

○진성준 위원 부칙 논의하고 가야 된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이 101까지는 다 끝난 건가?

○진성준 위원 인프라법 부칙 논의하고 가야 한대.

○박대출 위원 지금 101까지 다 끝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박대출 위원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끝난 건데 아까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수출입은행.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출입은행법이 2개가 있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둘 다.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17페이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거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당초 대출·보증과 연계해 출자해야 하는 것을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보시면 개정안과 같이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하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자금 운용방식의 무분별한 확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이게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도 여기 있는 대출이나 보증 연계 출자 제한을 폐지하되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출자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페이지가…… 122페이지.

○ 김영진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박대출 위원 안전할 때 하자 이런 말이네요.

○ 소위원장 정태호 122페이지,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 허용안.

○ 박수영 위원 기재부 의견 바꾸시는 거예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 박대출 위원 전제조건을 하나 넣자는 말 아니야, 지금?

○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대외경제국장입니다.

진성준 의원님이 저번주에 발의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 박수영 위원 같은 조항입니까?

○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같은 내용입니다. 최은석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하고 그 내용 중의……

○ 박대출 위원 지금 전제조건 넣은 게 뭐였지? 짧은 것 뭐 있었잖아.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구는요, 수출입은행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충분한 경우에 한한다.

○ 박대출 위원 수익성 확보 충분.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수익성 확보가 충분한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경우에 출자할 수 있느냐, 미리 대출이 나갔거나 아니면 미리 보증이 나간 기업에 대해서만 출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엄격하고 과도한 조항이니 독자적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수익성 확보가 되는 것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조항을 하나 같이 이렇게 넣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출자를 할 때는 당연히 수익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김영진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박대출 위원** 선언적인 의미로 넣자는 얘기인가?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의원님이 9월 18일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진성준 위원** 제가 지난주에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하면 좀 합리적인 논의도 가능하고 대안적 논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의 시점이 좀 너무 늦어 가지고 이번 소위에 회부되지 못했거든요. 회부해서 함께 심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박수영 위원** 병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성준 위원** 위원장이 회부해 주셔야 돼.

○**박수영 위원** 전체 위원장이, 아니면 소위원장이?

○**진성준 위원** 전체 위원장이.

○**김영진 위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부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에 직회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소위에 직회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도 안 만들어졌고 검토가 안 됐고…… 9월 18일 날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서 그걸 병합해서 심사하기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 부분만 그런 거예요, 뒷부분도 그런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뒷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법안은 또…… 뒷부분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병합심사를 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수출입은행 관련된 조항들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뒤에 별도의 수출입은행법이 또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종욱 의원,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출입은행법은 심사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왜냐하면 정부에서 수출입은행법을 좀 빨리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27페이지 봐 주실래요?

여기 127페이지 보면 현행에 2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 그리고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

여 출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된 놈, 보증이 된 놈에 대해서만 지금 출자가 돼 있는데 이것은 좀 과도한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 개정안의 2항에 보시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그리고 출자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대출이나 보증이 된 기업에 대해서만 출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삭제가 됩니다. 이래서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되지 않은 기업한테도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2항이고요.

그 밑에 3항을 하나 만들어서…… 제25조에 업무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3항을 하나 만들어서 수출입은행은 제20조의2제2항, 지금 방금 출자할 수 있는 이 조항,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충분한 경우에 한다’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되 수익성 확보가 되는 사업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무리한 수출입은행의 손해나 부실이 날 가능성을 예방하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이 동시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진성준 위원님도 제출하셨고 조금 전에 협의해 가지고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원래 순서대로 그대로 갈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지금 민투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의 연장 여부가 동법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특례제한법도 같이 보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가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국유재산특례법은 민투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거랑 같이 가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순서대로는 또 수출입은행으로 가네.

수출입은행 뒷부분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종욱·신영대 의원 대표발의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갑시다. 거기까지 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42페이지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수출입은행 출연근거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기존에 없었던 수출입은행이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법에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출연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공급망안정화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에 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상환 의무가 없는 출연금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이 가능해지면 자체적인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감소하거나 출연금만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 확충을 위한 정부의 출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으로 수출입은행에 출자된 자금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되는 국가재정의 간접지출로 볼 수 있는데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는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신설하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개편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또는 두 번째 개정안과 같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재부가 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실적,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활용한 지원 내역 등을 포함한 기금의 추진 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44페이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통제하고 관련해서 여기 있는 기금 자체를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지금 방금 국회사무처에서 얘기한 2항처럼 추진 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 주세요.

○**박수영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대출 위원** 국회가 그냥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장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이요.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으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질 것 같은데……

물론 정부가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조금 더 갖겠다, 또 법률적 엄격함에서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라면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으로 관리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진성준 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관련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국가재정법상의 정부 기금으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게 완전히 민간에 맡겨 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사업,

정부가 정부 이름으로 하기 어려운 중간 영역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재원이 정부가 세금이나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보증채무를 수출입은행에서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재원 측면에서도 이게 완벽하게 정부 사업이 아니고요.

정부 통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정부 보증채무를 발행할 때 국회에 이런 정도 정부 보증채무를 발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중간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지 여기 정부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들이요.

이의 없으면 통과시킬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합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번으로, 연차보고서 작성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153페이지……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정부에서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요 아까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최은석 의원님 안하고 관련해서 2안에 보면 큰 항목이 2개가……

○소위원장 정태호 어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최은석 의원님이 제출하신 거는 두 가지 항목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 허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항목은 128페이지에 간접투자대상 확대 방안인데요. 간접투자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셨고요.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 허용안은 논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라도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급한 이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뭐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22페이지 대출을……

○소위원장 정태호 1번을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진성준 위원님이……

○박대출 위원 그거 안 된다 했던 거를……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거를 좀 처리해 주셨으면……

○소위원장 정태호 1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1번 항목이요.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이 그러면 양해가……

○진성준 위원 1번은 아니고, 2번을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1번은 이를테면 안전한 투자가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투자를 막 하다 보면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건데 수익성

이 충분히 있는지를 따져서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법안의 취지거든요. 아까 그것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진성준 위원 그러니 그거를 함께 병합심사 하자는 거고……

○박대출 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병합으로 해야 되고 조금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이니까 하는 거야. 그거를 왜 자꾸 반박자 끊어 가려고 그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거는 직회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박대출 위원 아이참,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참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해.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제가 사회를 보니까 가만히 계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까 중간에 직회부가 된 걸로 간주하고 논의해 보십시오하고 소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진성준 위원님이……

○진성준 위원 만약에 제 법안을 할 것 없이 우리 소위원회가 법안의 자구 조정이나 문안의 신설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심사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번 항에 대해서도, 간접투자대상 확대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진전된 법안을 내놓았어요. 그게 그 법이에요. 1·2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또 기재부의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제 법안과 병합심사 하지 말고 제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그 취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이걸 좀 급히 하자는 이유는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에 출자를 아마 수출입은행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 안 되니까 가능한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 그런데 중간에 진성준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직회부 해 가지고 병합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진성준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의 취지를 살려서 오늘 토론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 아까 병합 얘기가 나와서 넘겼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좀 해 달라는 입장이에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을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하면 이 자체만 가능한데 그 내용을 넣어서 감안하자 그러면 병합심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취지는 여하튼 간에 진성준 위원님은 신중하게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진성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지요.

○진성준 위원 그 점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결의로 위원장께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법안은 아직 우리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거든요, 법안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데 이거는 이런 현실적인 시급성이 있으니 진성준 그 법안은 위원장이 직회부를 우리 소위원회에 해 줘서 빨리 논의하게 해 주시면 제일 좋겠다.

○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의원님이 빌의한 법안이니까, 최은석 의원님 빌의 취지도 여하튼 정부가 요청하는 취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급하다라는 거지요.

○ 박대출 위원 급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보완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것대로 처리하고 또 하지요. 그러면 나쁠 게 뭐 있어.

○ 진성준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 박대출 위원 그 의미가 아까 김영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무턱대고 법안 없이 문구를 넣기에는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지요.

○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122페이지에 있는 1번 항목하고 128페이지에 있는 2번 항목은 약간 다른 내용이고요. 그런데 127페이지의 제20조의2 2항을 고치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은에 부실 우려가 생길 수도 있으니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항 하나를 더 만들어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을 지금 진성준 위원님이 직회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는 직회부라는 형식을 빌든 아니면 제20조의2 2항에 대한 보완 조항을 하나 만들어 넣든 형식논리하고 상관없이……

○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2항을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항은 여기 있는 개정안처럼 수정하는 거고요.

○ 소위원장 정태호 ‘출자할 수 있다’로 하고?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출자할 수 있다’, 개정안처럼 수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25조 업무 제한 항목에 3항을 하나 만들어 넣는 겁니다. 그 3항을 어떻게 만들어 넣느냐, 아무데나 너희들 출자하지 마라, 그래서 ‘수출입은행은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충분한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을 만들어 넣으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넣는 게 진성준 위원님이 제출할 법안인데 그게 회부가 안 돼서 그 내용에 따르는 효과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덜컥 넣기는 우리는 조심스럽다는 게 제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말씀이신데 지금 직회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성준 위원님이 직회부를 요청하는 안과 완전 별개로……

○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기 있는 2항을 이렇게 바꾸면 위험이 있으니……

○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차관님, 어차피 진성준 의원님 안이 여기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 진성준 위원님이 동의해 주느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진성준 위원 글쎄, 저는 이 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면 병합하지 않고 소위원회의 판단으로 조문을 신설하거나 꼭 25조가 아니라 20조의2의 후단에다가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결의하신다면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시지요.

○ 진성준 위원 그런데 그 단서 없이는 그냥 못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대출 위원 그런데 그 단서를 넣어 버리면 다른 출자하는 출연은 수익성 확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되는, 다른 법안을 부정하는 의미도 있어요. 법안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

○**진성준 위원** 직접투자의 경우니까. 보증이나 대출이나 하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직접투자인데 직접투자라는 게 그 문구를 꼭 넣어야 된다면 다른 데 출연은……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대출 위원** 법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야.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제가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박대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수익성 확보가 충분할 경우에 한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중복 아닌가요? 수은이 어디 출자를 하는데 수익성 확보 안 되는 사업에 출자를 하는 겁니까? 등등 해서 조금 논의할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5분 남겨 놓고 이거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아니냐.

한 번 더 하더라도 다른 법안도 남아 있지 않아요? 정부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넣으면 외부에 대한 대항력 이런 건 생기겠지요.

○**박대출 위원** 다른 법을 다 부정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논의를 좀 더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이렇게 하지요.

○**박대출 위원** 한 법안만 열심히 하고 다른 법안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까 정부가 법인에 대한 출자 그 부분이 급한 이유를 공급망 기금이나 첨단기금에 출연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방금 전에 공급망기금에 대한 출연 근거를 우리가 지금 의결을 했기 때문에 급하다는 그 뜻이, 급하다는 그 이유가 잘 소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급하다고 하는 이유가 충분히 소명이 된 이후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하게 저희부가 안 된 법안을, 사실 저희도 검토가 안 된 법안을 이렇게 지금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다음에 병합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하지요.

○**박수영 위원** 일정을 잡아 돼요. 남아 있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일정을 잡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영진 김영환 박대출 박민규 박수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